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 고령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의
관리 · 감독 의무 명시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29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명시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23.

다. 회 부 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PC 및 모바일 기기와 이를 활용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고, 특히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등이 일반화되면서 메신저, 블로그, 커뮤니티 등과 같은 SNS 이용이 활발해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각종 연구에서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장애인의 PC·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임.

고령층도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정보 격차를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관련 지침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접근성 항목에 대한 제공업체의 준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두고, 이와 함께 정부가 지능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1.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명시 등

가. 개정안 요지

- 국가기관등은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의 편의 증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 ----- ----- ----- ----- -----하고,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지속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⑦ (생략)	<u>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u>-----.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u>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의 편의 증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46조제1항에¹⁾ 따르면 국가기관등은²⁾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모바일앱, 무인정보단말기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 제46조제2항에서는³⁾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 증진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국가기관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1)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410호)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⁴⁾ 따라 다음과 같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관리·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매년 웹사이트(1,000개), 모바일 앱(300개), 키오스크(800대)를 대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 수준을 조사하는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함.
- 웹사이트, 모바일 앱,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⁵⁾ 및 국가표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4년 3월부터 운영 중임.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자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실태조사
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정통부고시 제 2022-23호) 제2장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기능 설계 지침에서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반응시간 보완, 시력·청력 보완·대체 등 설계 지침을 제공함.

-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IT 개발자를 대상으로 접근성 설계 필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설계방안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및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수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96.1%) 대비 장애인, 고령자의 디지털 접근 수준(보유율)은 각각 89.2%, 91.0%이고, 디지털 역량 수준(이용능력)은 각각 76.1%, 56.5%로 일반국민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2023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접근성 준수정도에 있어 웹사이트 65.8점, 모바일 앱 75.6점, 키오스크 67.3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일반국민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장애인·고령자의 PC·모바일 기기의 보유율과 이용능력 및 웹 접근성 준수정도를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에 대해 접근성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기관등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대상을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두고 있는데 반해, 안 제46조제1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을 “국가기관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보장”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 제안이유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접근성 보장 의무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를 수용하는 입장임. 또한, 안 제46조제1항에 따른 책무는 국가기관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SNS나 웹사이트 제공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임.
-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정보통신에 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감독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정부의 관리·감독은 대상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만일 본 법안이 사인(私人)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면, 의무의 부과는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할 수 있고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관련 내용이 더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

○ 참고로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안」 이6)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제정안은 본 개정안의 개정 대상인 제46조를 포함하여 현행

6) ① 「**디지털포용법안**」 (의안번호 2200551,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제1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설계·제작하거나 제공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69조제2항제4호 및 제70조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의안번호 2202792,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취약계층(이하 “장애인·고령자등”이라 한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누리집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지능정보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관하여 보완·확대하면서 현행법 제46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디지털포용법안」 심사 시 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8